

현진노인복지센터

4월호 - 2023-04호

☆ 현진노인복지센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예쁜 계절 봄,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 봄입니다. 아직 봄 나들이를 못 가셨다면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집 앞에 혹은 가까운 공원에 가셔서 봄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그냥 보내기 아쉬운 계절, 너무 짧은 계절 봄이기에 즐거운 추억 남기며 설레는 봄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 내 사 항◀

- 매주 종사자 및 어르신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 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문의를 해주시고 반드시 센터에도 알려주세요.
- 센터는 환경부 승인 '코로나 바이러스 소독가능 제품'기준에 맞는 소독제로 매일 소독을 합니다.
- 아침식사(1,000원)을 신청하신 어르신들께 아침식사(죽식)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행 사 일 정◀

※ 2023년 04월 25일 어르신들 피부검진(흥덕보건소)을 진행합니다.

◆ 3월 프로그램 및 행사 사진



☞ 데칼코마니(인지활동)



☞ 산책(신체활동)

안 내 문

◆이용료납부: 본인부담금 매월 청구서를 받으시고 15일 내에
어르신 성함으로 계좌 이체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00-027-019115 / 권현숙)

◆현진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goldsanatorium.cafe24.com>
을 통해 센터의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첨부내용: * 소식지 1매.
* 입주비 납부 의뢰서 1매.
* 전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1매.
* 전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1부.
* 당월 식단표 1매.
* 식비인상 안내문 1매.
* 프로그램계획서 1매. 끝.

(담당 : ☎ 043-236-4774 / e-mail:hjnj4774@daum.net)

식비 인상 안내문

현진노인복지센터에서는 계속되는 물가인상과 식재료비의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식비를 아래와 같이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인상된 금액은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호자님의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며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식비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아침 식비	1,000원(1식)	기존과 동일	
점심 식비	2,500원(1식)	2,800원(1식)	1식 300원씩 인상
저녁 식비	2,000원(1식)	2,300원(1식)	

※ 간식비는 전년도와 동일(1일 1,000원)

■ 시행일 : 2023년 4월 1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급여계약 목적 등)

-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 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계약기간)

-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② 장기요양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재 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계약해제)

-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비급여 대상 항목과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1와 같다.

■ (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매월 이용료 등의 납부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 (이용료 변경 및 절차)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때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2023년 주야간보호 비급여 항목 및 수가 기준

2023 04. 01 적용

1등급													
구분	1일 수가	본인부담금 (15%)		본인부담금 (9%)		본인부담금 (6%)		비급여			합계		
		일수가	월수가	일수가	월수가	일수가	월수가	점심식대 2,800원	저녁식대 2,300원	간식비 1,000원	15%	9%	6%
25일기준	64,400	9,660.0	241,500.0	5,796.0	144,900.0	3,864.0	96,600.0	70,000	57,500	25,000	394,000	297,400	249,100
22일기준			212,520.0		127,512.0		85,008.0	61,600	50,600	22,000	346,720	261,712	219,208
21일기준			202,860.0		121,716.0		81,144.0	58,800	48,300	21,000	330,960	249,816	209,244
20일기준			193,200.0		115,920.0		77,280.0	56,000	46,000	20,000	315,200	237,920	199,280
2등급													
구분	1일 수가	본인부담금 (15%)		본인부담금 (9%)		본인부담금 (6%)		비급여			합계		
		일수가	월수가	일수가	월수가	일수가	월수가	점심식대 2,800원	저녁식대 2,300원	간식비 1,000원	15%	9%	6%
25일기준	59,660	8,949.0	223,725.0	5,369.4	134,235.0	3,579.6	89,490.0	70,000	57,500	25,000	376,225	286,735	241,990
22일기준			196,878.0		118,126.8		78,751.2	61,600	50,600	22,000	331,078	252,327	212,951
21일기준			187,929.0		112,757.4		75,171.6	58,800	48,300	21,000	316,029	240,857	203,272
20일기준			178,980.0		107,388.0		71,592.0	56,000	46,000	20,000	300,980	229,388	193,592
3등급													
구분	1일 수가	본인부담금 (15%)		본인부담금 (9%)		본인부담금 (6%)		비급여			합계		
		일수가	월수가	일수가	월수가	일수가	월수가	점심식대 2,800원	저녁식대 2,300원	간식비 1,000원	15%	9%	6%
25일기준	55,080	8,262.0	206,550.0	4,957.2	123,930.0	3,304.8	82,620.0	70,000	57,500	25,000	359,050	276,430	235,120
22일기준			181,764.0		109,058.4		72,705.6	61,600	50,600	22,000	315,964	243,258	206,906
21일기준			173,502.0		104,101.2		69,400.8	58,800	48,300	21,000	301,602	232,201	197,501
20일기준			165,240.0		99,144.0		66,096.0	56,000	46,000	20,000	287,240	221,144	188,096
4등급													
구분	1일 수가	본인부담금 (15%)		본인부담금 (9%)		본인부담금 (6%)		비급여			합계		
		일수가	월수가	일수가	월수가	일수가	월수가	점심식대 2,800원	저녁식대 2,300원	간식비 1,000원	15%	9%	6%
25일기준	53,580	8,037.0	200,925.0	4,822.2	120,555.0	3,214.8	80,370.0	70,000	57,500	25,000	353,425	273,055	232,870
22일기준			176,814.0		106,088.4		70,725.6	61,600	50,600	22,000	311,014	240,288	204,926
21일기준			168,777.0		101,266.2		67,510.8	58,800	48,300	21,000	296,877	229,366	195,611
20일기준			160,740.0		96,444.0		64,296.0	56,000	46,000	20,000	282,740	218,444	186,296
5등급													
구분	1일 수가	본인부담금 (15%)		본인부담금 (9%)		본인부담금 (6%)		비급여			합계		
		일수가	월수가	일수가	월수가	일수가	월수가	점심식대 2,800원	저녁식대 2,300원	간식비 1,000원	15%	9%	6%
25일기준	52,050	7,807.5	195,187.5	4,684.5	117,112.5	3,123.0	78,075.0	70,000	57,500	25,000	347,688	269,613	230,575
22일기준			171,765.0		103,059.0		68,706.0	61,600	50,600	22,000	305,965	237,259	202,906
21일기준			163,957.5		98,374.5		65,583.0	58,800	48,300	21,000	292,058	226,475	193,683
20일기준			156,150.0		93,690.0		62,460.0	56,000	46,000	20,000	278,150	215,690	184,460